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34

발의연월일 : 2020. 12. 18.

발 의 자:김선교·정찬민·윤창현

정진석 • 이만희 • 김예지

안병길 • 권성동 • 정운천

성일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국내확산 장기화로 농어촌 경제가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가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고, 이와 함께 농어민등이 농기계 및 기자재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구입 시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 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및 제10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자재"를 "기자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기계"를 "기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계와 관련된 부품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를 "기자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 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

용한다.

제3조(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 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
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8) ①
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	
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	<u>.</u>
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	
고, 제5호 및 제6호는 <u>2020년 1</u>	<u>2023년 1</u>
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	<u> 2월 31일</u>
해서만 적용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5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	
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	
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	
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	
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 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u>기자재</u>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 나. (생략)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 사. (생 략) 6. (생 략) ② (생 략)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 제1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 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 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

기자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6호에서 같다)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기계와 관련된 부
<u>품을 포함한다)</u>
라. ~ 사.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② (현행과 같음)
[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
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
급에 관한 특례) ①

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 ⑨ (생략)

기자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부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부
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
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u>기자재</u>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